

의안번호	2201868
의 퇴 인	맹성규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3.
추 계 번호	24A206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제7호 (예산의원칙)	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별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한다.	의무규정
	안 제86조의2 (재정사업의 영기준검토)	①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별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한다. ②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작성한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제7호 (예산의원칙) 안 제86조의2 (재정사업의 영기준검토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의결을 전제로, ① 정부의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및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 주기로 재검토 ② 국회예산정책처는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
 -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제1869호): 예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, 위원회에서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
 - 「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제1870호)은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작성 및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보고를 규정

- 개정안에 따라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·시행시 정책연구비, 분석·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출연금 및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영기준예산제도 도입방식을 어떻게 전제할 것인지에 따라 소요비용의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
 - 현재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전체 재정사업 및 정보화사업, 보조사업, 기금 및 부담금에 대한 “재정사업평가”를 수행함. 개정안에 따른 영기준예산제도를 동 재정사업평가 내에서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
 - “재정사업평가”는 총 53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·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심층평가, 보조사업 연장평가, 기금 및 부담금 평가로 구성됨
 - 사업수행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방식으로 진행되며, 예산은 사업출연금 및 정책연구비, 일반용역비 및 국내외 업무여비 등이 편성됨

[표 1] 최근 5년간 재정사업평가(2644-300) 사업비 규모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(안)
사업비	1,512	1,887	1,997	3,257	3,257

자료: 기획재정부, 2024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국회예산정책처의 ‘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’ 작성의 경우 평가기법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비, 추가 인력 소요에 따른 인건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추가재정소요는 정부의 영기준예산제도의 수행방식이 구체화된 후 이에 대응하여 추계가 가능한 측면이 있음
 - (참고)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제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제도 (「국회법」 제79조의3 제1항) 도입 당시, 2015년 신규 예산으로 조세특례평가 지표 및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(260-00) 1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
- 따라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근거가 부족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태정립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assembly.go.kr